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2. 변경 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증권신고서 전반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제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u>2011년 5월</u> <u>모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u> : <u>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u>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u>정정전1) 참조</u>	(삭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u>정정전2) 참조</u>	<u>정정후2) 참조</u>
제2부. 6.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신탁업자 보수 : 연 0.05%</u>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3%</u>	<u>신탁업자 보수 : 연 0.03%</u>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15%</u>
제2부. 6.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정정전3) 참조</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정정후3) 참조</u>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템플턴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에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

	<p>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6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Templeton China Fund 에 주로 투자하는 『 템플턴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Templeton China Fund 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i) 중국, 홍콩, 대만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거나 이들 지역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ii) 중국, 홍콩, 대만 지역에서 판매/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거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목적의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i) 주식이 거래되는 주요 증권 거래 시장이 중국, 홍콩, 대만에 위치하거나 (ii) 중국, 홍콩, 대만 내 자산 또는 통화와 연계된 기업의 지분증권에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제2부. 8. 가.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u>정정전4) 참조</u>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u>정정후4) 참조</u>
제2부. 8. 나. 투자 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u>정정전5) 참조</u>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u>정정후5) 참조</u>
제2부. 9. 나. 위험 관리	<p>한편, 모투자신탁이 홍콩달러 이외에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분산투자하므로, 개별투자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p>	<u>(삭제)</u>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정정후6) 참조
----------------------------------	------	----------

정정전1)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위탁운용사 및 내용

펀드명	템플턴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회사명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주소 및 연락처	7 Temasek Boulevard, #38-03 Suntec Tower One, Singapore 전화번호: 65 6338 7177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싱가포르에 리서치 사무소 개설 - 1992년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설립; 싱가포르재정감독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투자운용사로 등록 -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펀드운용 라이선스 보유 - 미국 증권감독원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등록 및 홍콩증권선물규제위원회(Hong Kong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의 투자운용 라이선스 (Type 9 License in Asset Management) 보유

정정후1)

(삭제)

정정전2)

나.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2010.12.31.기준)

펀드 매니저	Mark Mobius
운용 자산규모	약 US\$ 500억
운용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펀드, 템플턴 차이나 펀드 등 운용경력 30년 이상 -20세기 10대 펀드매니저 선정(1999년 칼슨 컨설팅 그룹) -1997,1998년 2년 연속 세계 최우수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매니저 선정(로이터 서베이)

※ 상기인이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정정후2)

나. FTIF Templeton China Fund 책임운용인력

펀드명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2010년12월31일 기준)		책임운용 전문인력 여부
					펀드수	규모(백만)	
템플턴 차이나 펀드	Mark Mobius	74	임원, 회장	- 이머징마켓에 30년간의 경력 - 1987년: Templeton Emerging Markets Fund, Inc.에 사장으로 입사.	52	\$50,011.0	Y

※ 상기인이 FTIF Templeton China Fund 의 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정정전3)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템플턴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관련주식 등에 신탁 재산의 7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모투자신탁은 중국관련주식 등에 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 중국관련주식 이란: 1) 중국(상하이, 심천 포함) 또는 홍콩의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상장 예정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 2)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주식 3) 또는 상당한 자산 내지 본사가 중국에 위치한 기업의 주식 *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100%) - Bottom-up 기업분석 및 Value-Oriented approach를 바탕으로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종목에 선별투자.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재산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해외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 부분은 중국투자에 정통한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의 해외 계열투자운용사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가 운용업무위탁 을 받아 운용.

정정후3)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템플턴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주요투자대상	FTIF 템플턴 차이나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탁 (주식-재간 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서 중국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의 하위펀드 Templeton China Fund 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중국관련주식 이란: 1) 중국, 홍콩, 대만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거나 이들 지역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 2) 또는 중국, 홍콩, 대만 지역에서 판매/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거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3) 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요 증권 거래 시장이 중국, 홍콩, 대만에 위치하거나, 중국, 홍콩, 대만 내 자산 또는 통화와 연계된 기업의 주식 *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100%)
-----------------------------------	---

정정전4)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국내주식	30% 이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해외주식	70% 이상	중국 또는 홍콩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증권, 또는 주요 수익 또는 자산이 중국에서 발생하거나 위치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위 제1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정정후4)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 이스턴 유럽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일반주식	40% 이하	일반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40% 이하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합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어음	40% 이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정정전5)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3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매매	<p>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정정후5)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p> <p>○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 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간</p>

	<p>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p>	<p>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u>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간</u></p>
<p>이해관계인</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p>	
<p>계열회사 증권의 취득</p>	<p>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1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u>외국</u>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u>외국</u>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및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p> <p>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u>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서 <u>외국</u>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u>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라.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의 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u>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u> 경우</p> <p>○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 <u>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u> 투자하는 행위</p> <p>○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u>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간</u></p>

	<p><u>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p> <p>○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

정정전6)

(신설)

정정후6)

모투자신탁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보수·비용 고려시, 예상 총보수·비용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 리회사	기타 (신탁업자보수포 함)	총보수비용	선취판매수수료
FTIF Templeton China Fund X share	0.00%	0.00%	0.20%	0.16%	0.36%	0.00%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 권 자투자신탁(E)(주식-재 간접형)	0.90%	1.55%	0.015%	0.03%	2.495%	0.10%
총보수·비용	0.90%	1.55%	0.215%	0.19%	2.855%	0.10%

3. 효력 발생일

2011년 5월 13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